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 방 의 회 법 안

검 토 보 고

〈지방의회 관련 사항의 분법〉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42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개 요	3
1.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3
2. 지방의회에 관한 법률의 별도 제정 필요성	7
IV.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	10
1. 총 칙(제1장)	10
가. 제명 및 목적(안 제1조)	10
나. 의회의 설치 및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12
다. 조례(안 제4조)	13
라. 의회위원의 선거 및 당선 통지 및 등록(안 제5조 및 제6조)	16
마. 의석배정(안 제7조)	20
바. 정례회, 임시회 및 개회식 등(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22
2. 의회의 기관과 경비(제2장)	24
가.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및 의장의 직무(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24
나. 의장·부의장의 위원회 참석과 발언(안 제14조)	26

다.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임시의장, 보궐선거 등(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27
라. 의장·부의장의 사임(안 제20조)	33
마. 의장·부의장의 겸직 금지 및 당적보유 제한(안 제21조 및 제22조)	34
바. 사무기구의 설치(안 제23조)	38
사.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 및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안 제24조 및 제25조)	40
아. 인사교류협의회 등(안 제26조)	44
자. 지방의회의 경비 독립(안 제27조)	46
 3. 의원(제3장)	 49
가. 선서(안 제28조)	49
나. 의원의 의무(안 제29조)	50
다. 겸직신고 등 금지 (안 제30조)	52
라.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안 제31조)	55
마. 정책지원 전문인력 및 재해보상(안 제32조 및 제33조)	62
바. 의원의 청가 및 결석(안 제34조)	63
사. 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및 지방의회의 의무 등(안 제35조 및 제36조)	66
 4.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4장)	 67
 5.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제5장)	 77
가. 교섭단체, 위원회의 설치, 상임위원회의 직무 등(안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77
나. 전문위원과 공무원(안 제45조)	79
다. 전문가의 활용(안 제46조)	82
라.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안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84
마. 위원회의 개회, 연석회의, 공청회 및 청문회 등(안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90
 6. 회의(제6장)	 103
가. 개의(안 제58조)	103

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표결의 선포, 표결방법(안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104
다. 회의의 공개, 의안의 발의, 조례안예고, 회기계속의 원칙, 회의규칙, 회의록 등(안 제63조부터 제72조까지)	109
7. 청원(제7장)	116
8. 행정기관과의 관계(제8장)	120
가.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등(안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120
나.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안 제81조)	128
9. 사직·퇴직·결원과 자격심사(제9장)	130
10. 질서(제10장)	133
11. 보칙(제11장)	140
가. 기간의 기산일 및 의회규칙(안 제95조)	140
12. 부 칙	141
가. 시행일	141
나. 다른 법률의 개정	14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해식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11.
3. 회부연월일 : 2024. 6.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 1991년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에 관하여 의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집행기관의 행정을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견제·감시하는 통제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기존의 중앙집권적 행정 시스템은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삶의 질 개선에 한계가 있고,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과 저출산·고령화 등의 급격한 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에 관한 역할과 관심은 더욱 집중되고 있음. 하지만 지방의회에 관한 현행법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의 한 장(제5장)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방의회의 위상에 맞지 않음.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운영에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지방의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지방의회 간 및 지방의회와 공공기관 간 상호 인사교류를 위하여 시·도 단위로 인사교류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간 상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 라.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이를 계상하도록 함(안 제27조).
- 마.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속 위원회의 안전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전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바.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8조 및 제49조).
- 사. 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

Ⅲ. 개 요

1.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제정안은 지방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과 별개의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총 12장 9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더해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이하 “「회의규칙 권고안」”이라 함)에 있는 지방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사항 및 국회의 운영에 관한 「국회법」 규정 등을 참고하여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기존의 논의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제정안의 구성>

구분	조문 내용		관련 참조조문		
			지방 자치법	국회법	회의규칙 권고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	—
	제2조	의회의 설치	§37	—	—
	제3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47	—	—
	제4조	조례	§28	—	—
	제5조	의회의원 선거	§38	—	—
	제6조	당선 통지 및 등록	—	§2	§2
	제7조	의석배정	—	§3	§3
	제8조	정례회	§53	§4	—
	제9조	임시회	§54	§5	—
	제10조	개회식	—	§6	§4
	제11조	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56	§7~8	—

구분	조문 내용		관련 참조조문		
			지방 자치법	국회법	회의규칙 권고안
제2장 의회의 기관과 경비	제12조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57	§9, 15	—
	제13조	의장의 직무	§58	§10	—
	제14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	§11	—
	제15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59	§12	—
	제16조	임시의장	§60	§13	—
	제17조	보궐선거	§61	§16	—
	제18조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	§63	§18	—
	제19조	의장불신임의 의결	§62	—	—
	제20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	§19	§12
	제21조	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	§20	§8의2
	제22조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	§20의2	—
	제23조	사무기구의 설치	§102	§21	—
	제24조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103	§21	—
	제25조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104	§21	—
	제26조	인사교류협의회 등	—	—	—
	제27조	경비	—	§23	—
제3장 의원	제28조	선서	—	§24	§5
	제29조	의원의 의무	§44	—	—
	제30조	겸직 등 금지	§43	§29	—
	제31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40	§30	—
	제32조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41	—	—
	제33조	상해·사망 등의 보상	§42	—	—
	제34조	의원의 청가 및 결석	—	§32	§7
	제35조	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45	§27	—
	제36조	의회의 의무 등	§46	—	—
제4장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37조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	§32의2	—
	제38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	§32의3	—
	제39조	이해충돌의 신고	—	§32의4	—
	제40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인선 등에 대한 회피	—	§32의5	—
	제41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	§32의6	—
제5장 교섭단체 위원회와 위원	제42조	교섭단체	§63의2	§33	—
	제43조	위원회의 설치	§64	§35	—
	제44조	상임위원회의 직무 등	§64	§35	—
	제45조	전문위원과 공무원	§68	§42	—
	제46조	전문가의 활용	—	§43	—
	제47조	특별위원회	§64	§44	—
	제48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45	—
	제49조	윤리특별위원회	§65	§46	—
	제50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66	§46의2	—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69	§55	—
	제52조	위원회의 개회	§70	§52	—
	제53조	연석회의	—	§63	§62
	제54조	공청회	—	§64	§63

구분	조문 내용		관련 참조조문		
			지방 자치법	국회법	회의규칙 권고안
	제55조	청문회	—	§65	—
	제56조	인사청문회	§47의2	§65의2	—
	제57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71	—	—
제6장 회의	제58조	개회	—	§72	§14
	제59조	의사정족수	§72	§73	—
	제60조	의결정족수	§73	§109	—
	제61조	표결의 선포 등	§(구)64의2	§110	§43
	제62조	표결방법	§74	§112	—
	제63조	회의의 공개 등	§75	§75	—
	제64조	의안의 발의	§76	§79	—
	제65조	조례안예고	§77	§82의2	—
	제66조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78	§79의2	—
	제67조	회기계속의 원칙	§79	—	—
	제68조	일사부재의의 원칙	§80	§92	—
	제69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81	§87	—
	제70조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82	—	—
	제71조	회의규칙	§83	—	—
	제72조	회의록	§84	§115	—
제7장 청원	제73조	청원서의 제출	§85	§123	—
	제74조	청원의 불수리	§86	§123	—
	제75조	청원의 심사·처리	§87	§125	—
	제76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88	§126	—
제8장 행정기관 과의 관계	제77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49	§127	—
	제78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50	—	—
	제79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51	§122의2	—
	제80조	서류제출 요구	§48	§128	—
	제81조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등	—	§127의2	—
제9장 사직·퇴직· 궐원과 자격심사	제82조	의원의 사직	§89	§135	—
	제83조	의원의 퇴직	§90	§136	—
	제84조	궐원의 통지	§93	§137	—
	제85조	의원의 자격심사	§91	§138	—
	제86조	자격상실 의결	§92	§142	—
제10장 질서	제87조	회의의 질서유지	§94	§145	—
	제88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95	§146	—
	제89조	발언방해 등의 금지	§96	§147	—
	제90조	방청인의 단속	§97	§153	—
	제91조	징계의 사유	§98	§155	—
	제92조	징계의 요구	§99	§156	—
	제93조	징계의 종류와 의결	§100	§162	—
	제94조	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101	—	—

구분	조문 내용		관련 참조조문		
			지방 자치법	국회법	회의규칙 권고안
제11장 보칙	제95조	기간의 기산일	-	§168	-
	제96조	회의규칙	§52	§169	-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	징계 및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정안에서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 권고안」 등의 지방의회 관련 현행 법령과 달리 규정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① 조례의 제·개정 주체를 지방의회로 명확히 규정하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4조),

②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인사교류를 위한 인사교류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안 제26조),

③ 지방의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이해관계 등록의무 부과 등의 사항을 마련하며(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④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안 제48조),

⑤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

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81조),

⑥ 기산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5조).

2. 지방의회에 관한 법률의 별도 제정 필요성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자치입법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에 관하여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의결기관이자 집행기관의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기관으로, 1991년 제1기 지방의회 선거 이후 현재까지 주민대표기관, 자치입법기관, 의결기관, 통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최근 중앙정부 및 집행부 중심의 행정 시스템이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¹⁾를 보이고,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고령화 등의 급격한 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분권’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주민 의사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²⁾.

1)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자치의 효율성 달성방안」(比較法研究, 고인석, 2023, p.1-43) 등에 따르면, 지방분권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가 미비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을 보유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견해가 있음.

2) 「지방의회법 분법 필요성과 방향성」, 김찬동, 월간 공공정책 2024. p.22-24.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시행일: 2022.1.13.)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³⁾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⁴⁾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국회법」의 적용을 받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에 관한 법률 규정이 개별법률로 규정되지 않고, 「지방자치법」의 한 장(제5장, 제37조부터 제104조까지)에 규정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제정안은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 전반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으로 두고, 지방의회에 관한 ‘구체화 법’으로서 지방의회의 조직·의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⁵⁾.

3) 「지방자치법」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4)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참고로, 제정안 부칙 제4조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을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와 같이 신설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 등에 위임하고 있으나, 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오히려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통일적 운영과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자율적 운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제정안 심사 시에는 제정안이 전체 지방의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나 조례나 회의규칙으로 정하기 곤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방의회가 조례 또는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자율적으로 규정할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를 면밀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자치제도 전반의 관점에서 법령체계 재정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해외사례 연구⁶⁾ 및 전문가·관계 기관 등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 우리나라와 법체계 및 지방자치제도가 유사한 일본·독일·프랑스 등의 경우에도 별도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 일반법에 지방의회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는 설명임.

IV.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

1. 총 칙(제1장)

가. 제명 및 목적(안 제1조)

국 회 법	제 정 안
국회법	지방의회법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국민의</u>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주민의</u>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은 제명을 「지방의회법」으로 하고, 목적을 ‘지방의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법률의 목적은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입법의 취지와 핵심 사항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표현하여 각 조항의 운용과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함⁷⁾.

7)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법제실, 2024, p.239

국회는 유일한 법률제정의 주체⁸⁾로서 「국회법」을 통해 스스로 ‘조직·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할 수 있겠으나,

지방의회는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마다 설치되므로 하나의 법률을 통해 일률적으로 모든 지방의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지방의회법」에서는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과 내부의 의사 등은 각 의회에서 조례나 회의규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제정안의 목적에 이 법의 규정사항이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조직·의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8) 「대한민국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나. 의회의 설치 및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지방자치법	제정안
제37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u>다음 각 호의 사항</u>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u>교류·협력</u>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u>제1항 각 호의 사항</u>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둔다. 제3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u>다음 사항</u>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u>교류협력에 관한 사항</u>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u>제1항의 사항</u>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정안 제2조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정안 제3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동일하게 제1항에서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등 지방의회의 필요적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임의적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 제3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과 달리 “제1항의 사항”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적 의결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의적 의결사항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법」과 동일하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표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음⁹⁾).

다. 조례(안 제4조)

지방자치법	제정안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제4조(조례) ① 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9) 참고로, 「구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제정안과 동일하게 “제1항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 “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개정되었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① <u>지방자치단체는</u> 주민의 복 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u>법령의 범위 안에서</u> 자치 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 · 군 및 자치구의 <u>조례나 규칙</u>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 는 아니 된다.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시·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u>조례</u>는 시·도의 조례 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u>조례 제정 절차, 공포 방법 등</u> <u>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법」에</u> <u>따른다.</u>
--	--

「대한민국헌법」과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
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되¹⁰⁾, 「지방자치법」 제28조제1
항 단서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은 ‘법률의 위임’을 얻어 제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 제정을 허용하고, 권리 제한
· 의무 부과 등에는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음¹¹⁾.

10)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상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
치법」 제47조제1항에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11) 분권화의 구체적 조치로서 조례제정권 강화, 재정분권, 사무이양 등이 필요하다. 첫째, 조례입법권 강

제정안은 조례제정 주체를 지방의회로 명확하게 하고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자유롭게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에 있어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다만,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언은 「대한민국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규정된 것이며, 대법원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를 일관되게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로 해석¹²⁾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¹³⁾.

또한, 제정안은 조례제정의 주체를 지방의회로 규정하고 지방의회가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무’의 의미가 지방의회의 사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조례제정 대상임을 명확하게 표현할 필

화가 필요하다. 현행 지방자치법(제22조)은 조례제정 범위를 ‘법령의 범위안’으로 규정하여 지방의 자율권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제정할 수 있게 개정해야 한다(지방자치와 분권강화방안을 위한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 자료집, 이승중, 2014, P.26)

12)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 지방자치법 제15조(현행 제22조)에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으로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13)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에 관한 헌법 제 114조제6항은 ‘법령의 범위 안’과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개념을 구분하여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회규칙 제정에 관한 헌법 제64조제1항과 법원규칙 제정에 관한 헌법 제108조 역시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117조제1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규정형식상 자치에 관한 규정(조례)제정 범위가 좁은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이승환,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본질과 범위」, 지방자치법연구, 통권 제31호, p.11)

요가 있겠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안 제4조와 관련하여, 헌법상 조례제정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점,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가 대법원 판례로 이미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해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지방자치법」과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제정안 제4조제2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30조의 규정을 조례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임¹⁴⁾.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30조와 같이 “시·군·자치구의 조례·규칙이 시·도의 조례·규칙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표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라. 의회의원 선거 및 당선 통지 및 등록(안 제5조 및 제6조)

국 회 법	회의규칙 권고안	제 정 안
	제38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제5조(의회의원 선거) ① 지방의회는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u>선출된 의회의원</u> (이하 “의

14) 참고로, 제정안 부칙에서 「지방자치법」 제30조를 개정하거나 삭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0조의 규정은 동일하게 유지됨.

제2조(당선 통지 및 등록)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9조(의원의 임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6조(당선 통지 및 등록) ①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선거구의 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해당 의회 사무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해당 의회 사무기구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	---

제정안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안 제5조제1항), 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며(안 제5조제2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의회에 대한 당선인 통지의무를 신설하고(안 제6조제1항), 의원 당선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정안 제6조제1항과 관련하여,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국회의원이 결정된 때,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명단을 공고하고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함.¹⁵⁾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당선인의 공고·통지의 대상에는 국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국회법」 제2조제1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선인 명단을 국회로 송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가 당선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회의원의 등록과 등원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⁶⁾.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대하여 국회의원당선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¹⁷⁾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15) 「공직선거법」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 지역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⑦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6) 참고로, 14대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1994.6.28.)하기 이전에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통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국회의원 당선인이 등록할 때, 비로소 국회가 당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국회법해설, 2024, p.19)

17) 「공직선거법」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③ 제187조(大統領當選人の 決定・公告・통지)제4항 및 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の 決定・公告・통지)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1인이 된 때”는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그 선거구”로 본다.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④ 제187조(大統領當選人の 決定・공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대상에는 지방의회가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제정안은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각 지방의회로 당선인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원활한 당선인 현황 파악 및 등원 준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당선통지는 선거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제정안 제6조제2항은 「회의규칙 권고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임.

의원 등록은 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의 당선 사실을 의원 명부에 등재하여 지방의회 소속의원임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의원의 직위는 등록과 상관없이 당선 후 임기가 개시됨으로써 당연 취득됨¹⁸⁾.

당선인의 등록은 의회의 의사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개별 지방의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치법규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제정안과 같이 ‘당선인의 등록에 관한 기본적

고·통지)제4항, 제189조제4항·제5항 및 제7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본다.

18) 「국회법해설」, 국회사무처, 2024, p.19

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당선인 등록은 의사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이므로 지방의회 자율권 보장 차원에서, 지방의회가 스스로 정하도록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마. 의석배정(안 제7조)

회의규칙 권고안	국 회 법	제 정 안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u>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u>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u>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u>	제3조(의석 배정) 국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국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제7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u>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u>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제23조에 따른 <u>사무기구의 장(이하 “사무기구의 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u>

제정안은 「회의규칙 권고안」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석
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국회법」과 동일하게 의장이 각 교섭단
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의석을 정하도록 하며,

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기구의 장이 지역
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법률로써 지방의회의 의석 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의석을 배정하는 사항은 지방
의회별 의석배정 방식을 고려하여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조례 또는
회의규칙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시·도 지방의회별 의석배정 방식>

의석배정방식	해당 시·도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서울특별시, 경기도
운영위와 협의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기타 (의원의 선수에 따라 배정)	대구광역시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의석배정은 의사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이므로 지방의회 자율권 보장 차원에서, 지방의회가 스스로 정하도록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바. 정례회, 임시회 및 개회식 등(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지방자치법	제 정 안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u>필요한</u>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정례회)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	제9조(임시회) ① 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사무기구의 장이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사무기구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

지방자치법	제 정 안
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u>부득이한 사유로</u>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회법」 제6조(개회식) 국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회의규칙 권고안」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u>사고로</u>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조례로 정한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회의규칙 권고안」에 규정되어 있는 정례회, 임시회, 개회식 등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법」과 대부분 동일하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개회식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지방의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적절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이미 17개 시·도의회 전체에서 조례 또는 회의규칙을 통해 개회식을 규정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개회식은 의사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지방의회가 스스로 규정하도록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2. 의회의 기관과 경비(제2장)

가.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및 의장의 직무(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지방자치법	제 정 안
제57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	제12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의회는 의원 중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지방자치법	제 정 안
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8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및 의장의 직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정안에서 규정한 것임.

참고로, 지방의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구체적인 의장·부의장의 투표 진행 방법 및 절차는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회의규칙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¹⁹⁾.

19)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행정안전부, p.201

나. 의장·부의장의 위원회 참석과 발언(안 제14조)

국 회 법	제 정 안
제11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4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정안은 「국회법」과 같이 지방의회 의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국회법」에서 의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의장의 의사정리권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것임²⁰⁾.

지방의회 의장의 경우에도 국회의장과 동일하게 의사정리권²¹⁾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지방의회 의장에게도 위원회 출석·발언 관련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회의규칙 권고안」에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에서 자율적으로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²²⁾

20) 「국회법해설」, 국회사무처, 2024, p.70

21) 「지방자치법」

제58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2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①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언내용은 위원회의 안전심사나 의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사 정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은 의사운영·관리
에 대한 사항이므로 지방의회 자율권 보장 차원에서, 지방의회가 스스로
정하도록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다.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임시의장, 보궐선거 등(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지방자치법	국회법	제정안
제59조(의장 직무대리) <u>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u>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u>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u> ② <u>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u>	제15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u>부의장은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시·도의 경우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u>
제60조(임시의장) 지방	제13조(임시의장) 의장	제16조(임시의장) 의장

리권이나 질서 유지권 등 극히 중요하고 간과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에 한정한다.

지방자치법	국회법	제정안
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u>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u>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61조(보궐선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3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 제57조제1항, 제60조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 한다)를 실시할 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	과 부의장이 모두 <u>사고가 있을 때에는</u>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6조(보궐선거)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8조(의장 등 선거시의 의장 직무대행) 의장 등의 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最多選)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국회의원 총선거 후	과 부의장이 모두 <u>사고가 있을 때에는</u>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7조(보궐선거) ①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8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 제12조제1항, 제16조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지방의회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지방의회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의장·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처음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2. 제15조제2항에 따라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임기 만료 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3.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 선거를 할 때 4.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5.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 의장을 선거할 때	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의장·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①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정안은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임시의장, 보궐선거 등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대부분의 내용이 「지방자치법」의 규정과 동일하나, 시·도의회 의장 직무대리에 관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

제정안은 시·도의 경우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장의 직무대리에 관한 시·도의회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리 규정>

의장 직무대리 규정	해당 시·도 의회
먼저 선출된 부의장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규정 없음	전라남도

또한, 제정안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 또는 ‘결위된 경우’의 직무대리, 임시의장 및 보궐선거에 관하여 규정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회의규칙은 의장의 ① 사고 시와 ② 결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직무대리를 규정²³⁾하거나, 의장의 결위, 법률상 사고 및 사실상 사고를 구분하여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²⁴⁾하고 있음.

2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5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법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의장이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결위된 경우와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부의장의 소속 교섭단체가 같을 때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의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제정안 제15조에서 규정된 ‘사고(事故)’는 궐위, 사실상의 사고 및 법률상의 사고를 모두 포함하는 것²⁵⁾이므로 「지방자치법」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음.

참고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34호, 시행일 2022. 1. 13.) 시 “지방의회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는 규정이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로 개정되었음.

<부득이한 사유와 사고의 개념>

▶ 부득이한 사유 : 법률상·사실상 사고 및 의장 궐위까지 포함

- (법률상 사고) 의장의 신상 관련 사항을 심사하거나, 의장이 토론에 참여
- (사실상 사고) 신병 등으로 결석하거나, 식사 등 사유로 일시 부재중인 경우
- (의장의 궐위) 사망·사직·퇴직·불신임 등으로 의장이 결석(闕席)

▶ 사고

- 전보, 퇴직,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 임명시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 휴가, 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자료: 행정안전부

24)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14조(의장 직무대리) ① 부의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리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시각부터 그에 해당하는 시각까지를 대리기간으로 한다.

1. 궐위, 사망 등 법률적 사고 : 보궐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2. 국내외 출장, 입원 등 사실적 사고 : 의장의 직무수행 의사표시가 있는 때까지

25)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행정안전부, p.212

라. 의장·부의장의 사임(안 제20조)

회의규칙 권고안	국 회 법	제 정 안
제12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9조(의장·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20조(의장·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정안은 의장과 부의장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국회의 경우, 「국회법」에서 의장·부의장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의 사임은 신분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의장·부의장의 선출(제정안 §12), 불신임(제정안 §19) 등과 동일하게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제111조²⁶⁾에서 지방자치단체의

26)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이하 “사임통지서”라 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에 사임한다. 다만,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까지

장의 사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의 사임도 법률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마. 의장·부의장의 겸직 금지 및 당적보유 제한(안 제21조 및 제22조)

회의규칙 권고안	국 회 법	제 정 안
제8조의2(의장의 겸직 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장·부의장의 겸직 제한) ① 의장과 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	제21조(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u>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u> 제22조(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된 날에 사임한다.

회의규칙 권고안	국 회 법	제 정 안
	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한다.

제정안은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안 제21조), 의장의 재임기간 중 당적 보유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안 제21조)

제정안은 「회의규칙 권고안」 제8조의2제2항과 같이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부의장으로 확대하여 규정함. 해당 내용은 의장 및 부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의 신분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제정안은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및 부의장으로 당선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회의규칙 권고안」 제8조의2제1항과 같이 ‘이미 당선된 의장 및 부의장의 겸직제한’에 대해서도 규율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의장·부의장의 의회 내 직위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국회법」은 의장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제정안과 겸직이 금지되는 직의 범위에 차이가 있음.

(안 제22조)

제정안은 「국회법」과 같이 지방의회 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회법」 제10조는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장의 지

위와 권한은 의장이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운영에 초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석됨.²⁷⁾

이러한 취지에서 의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었으며, 제16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2. 3. 7.) 시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규정이 도입되었음.

반면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에서 당적 보유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 의장에 당선되더라도 당적을 보유할 수 있음.

제정안은 의장·부의장의 당적 보유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는 입법형식은 타당하다고 보이지만,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할지 여부는 의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할 필요성과 의장의 당적보유를 제한함에 따른 권리제한의 정도 등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또한 제정안을 입법화한다면 「공직선거법」에 대한 동반개정이 필요함.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²⁸⁾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

27) 「국회법해설」, 국회사무처, 2024, p.86

28) 「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④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

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는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퇴직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에 대한 개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장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해 제정안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바. 사무기구의 설치(안 제23조)

지방자치법	국회법	제정안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u> ,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	제21조(국회사무처) ① 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국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원을 둔다. ③ 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제23조(사무기구의 설치) ① 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u> ,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 및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u>,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임면(任免)한다. ④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할 때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과 관련하여 사무총장이나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 또는 설명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정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사무처에	로 보한다. ③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시·도의회 및 시·군·자치구의회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은 시·도의회에는 사무처를, 시·군·자치구의회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광역·기초 의회 모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의회 사무기구 구성의 자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사.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 및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안 제24조 및 제25조)

지방자치법	제 정 안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도의회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	제24조(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① 사무직원은 의장이 임명한다. ② 의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의 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 정 안
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u>적용한다</u>.	③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제96조에 따른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25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기구의 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u>준용한다</u>.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로, “시·도”는 “시·도의회”로, “시·군·구”는 “시·군 및 구의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장”으로, “시·도지사”는 “시·도의회 의장”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 및 구의회 의장”으로, “부시장·부지

지방자치법	제 정 안
	사”는 “시·도의회 부의장”으로,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시·군 및 구의회 부의장”으로 본다.

제정안 제24조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은 의장이 임명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의 장에게 직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34호, 시행일:2022. 1. 13.) 이전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규정되었음.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 관련 조문의 연혁>

연혁	지방의회 인사권 관련 조문
지방자치법 (1949. 8. 15.)	제30조 지방의회에 서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u>의장이 임명한다.</u>
지방자치법 (1988. 5. 1.)	제8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u>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u>
지방자치법 (1994. 3. 16.)	제8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u>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u>

연혁	지방의회 인사권 관련 조문
지방자치법 (2006. 4. 28.)	제8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u>지방议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u>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2007. 5. 11.)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u>지방议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u>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2022. 1. 13.)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u>지방议회의 의장은</u>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u>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u>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3조제2항은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조는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주체로 지방议회의 의장을 명시하고 있고, 임용권자가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장·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24조는 현행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의장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25조는 「지방자치법」에서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해당 사항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

‘적용’은 대상 조항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에 쓰이는데 비해, ‘준용’은 특정 조문을 성질이 유사한 내용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방식인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신분은 지방공무원이며, 「지방공무원법」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아. 인사교류협의회 등(안 제26조)

지방공무원법	제 정 안
제30조의2(인사교류) ②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 의장은 해당 시·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다른 기관 간, 해당 시·도와 관할 구역의 시·군·구 간, 관할 구역의 시·군·구 간, 해당 시·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와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	제26조(인사교류협의회 등) ① 시·도의회와 시·군 및 구의회는 해당 시·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 간, 관할 구역의 시·군·구 간, 해당 시·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와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 기관 간 상호 <u>인사교류를 위하여 시</u>

지방공무원법	제 정 안
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 의 의장 소속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u>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u> 등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행정안전부령 또는 시·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 도 단위로 인사교류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소속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소속 직원 간 상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제정안은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가 시·도와 관할구역의 시·군·구 상호 간, 관할구역의 시·군·구 상호 간, 시·도 및 시·군·구와 공공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를 위하여 시·도 단위로 인사교류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상호 간 인사교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정안에 대하여는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²⁹⁾에 제정안과

29)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인사교류) ②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 의장은 해당 시·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군·

유사한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시행 중(시행일 2022.

1. 13.)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지방의회 상호 간 인사교류의 필요성은 있으나,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인사관계 법령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자. 지방의회의 경비 독립(안 제27조)

국 회 법	제 정 안
제23조(국회의 예산) ① 국회의 예산은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한다. ② 의장은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다. 다만,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산요구서 제출 기일 전일까지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국회	제27조(경비) ①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이를 계상한다. ② 의장은 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하며, 운영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를 말한다)의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방자치

구의 다른 기관 간, 해당 시·도와 관할 구역의 시·군·구 간, 관할 구역의 시·군·구 간, 해당 시·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와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도회의의 의장 소속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행정안전부령 또는 시·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국 회 법	제 정 안
소관 예산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40조(독립기관의 예산) ①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정부가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를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부가 「국가재정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국회 소관 세출예산요구를 감액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견을 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감액 내용 및 사유를 적어 국무회의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른 송부가 있는 때에는 그 감액 내용에 대한 의	법」 제142조제1항에서 정한 예산안 제출기일(이하 이 조에서 “예산안 제출기일”이라 한다) 3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가 의회 소관 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세출예산요구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감액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예산안 제출기일 15일 전까지 이를 의장에게 송부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송부가 있는 때에는 그 감액내용에 대한 의견

국 회 법	제 정 안
견서를 해당 국무회의 1일 전까지 정부에 송부한다.	서를 예산안 제출기일 7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한다.

제정안은 의회의 경비를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면서, 지방의회 의장이 세출예산요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장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³⁰⁾.

제정안은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의장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며, 의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의장의 의견을 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경비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지방재정의 총괄적 운영 필요성, 예산에 대한 심의·

30) 「지방자치법」

제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결권을 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의원(제3장)

가. 선서(안 제28조)

국 회 법	제 정 안
제24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u>헌법</u> 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8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u>헌법, 법령과 조례</u> 를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정안은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의 선서규정과 같이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초에 의회에서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참고로, 제4대 국회까지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를 실시한 다음 선서문을 의결하여 개회식에서 선서를 했으나, 제5대 국회 이후 「국회법」에 선서문을 규정하였음.

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으로서의 사명과 행동지표를 제시한다는 측면³¹⁾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선서 절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2조³²⁾에 규정되어 있음.

나. 의원의 의무(안 제29조)

지방자치법	제 정 안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	제29조(의원의 의무) ①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제30

31) 「국회법해설」, 국회사무처, 2024, p.115

3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정 안
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된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1988. 4.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전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었으나, 전부개정 시 처음으로 지방의회의원의 ①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②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③ 지위남용 금지의무가 규정되었으며,

이후, 2021. 1. 12. 전부개정 시 ④ 지방자치단체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금지 의무, ⑤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의무 등이 추가로 규정되었음.

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 겸직신고 등 금지 (안 제30조)

지방자치법	제 정 안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읍면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제30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읍면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지방자치법	제 정 안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삭 제> ④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지방자치법	제 정 안
(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⑤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정안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동일하게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겸직금지 사항의 공개제도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시 지방의회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해당 규정의 삭제 여부는 겸직금지 사항 공개제도의 취지, 개인정보침해 우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겸직현황의 공개 및 감시를 통한 지방의회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현행 「지방자치법」과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라.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안 제31조)

지방자치법	제 정 안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제31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지방자치법	제 정 안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u>4. 그 밖에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비용</u>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u>③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제1항 각호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u> <u>④ 구금된 의원이 법원의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비용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u>

「국회법」

제30조(수당·여비) 의원은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2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입법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 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3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제12조(특별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지방자치법	제 정 안
제13조(입법 및 정책개발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여비) ①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u> 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정안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같이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 근거를 마련하면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에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비용’을 신설하고(안 제1항제4호),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며(안 제3항 및 제4항),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5항).

(안 제1항제4호)

의정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가 이미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한 비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중복 지급 또는 과다 지급을 야기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현황>

(단위: 만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합계
광역의회 평균	4,197	2,341	6,538
기초의회 평균	2,763	1,776	4,539
총 평균	2,864	1,816	4,680

* 표의 금액은 연간금액임

* 자료: 행정안전부 '내고장 알리미'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수당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점³³⁾, 지자체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3항)

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이 범죄와 관련하여 구금됨에 따라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성과 성실성, 신뢰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³⁴⁾.

33) 「지방공무원법」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① 지방의회의원이 구금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신분 또는 자격이 정지되는 것은 아닌 점, ② 「대한민국헌법」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³⁵⁾ ③ 국회의원의 경우 체포·구금 시 보수지급 제한 규정이 없는 점³⁶⁾, ④ 구금되어 부단체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³⁷⁾의 경우에는 급여 등을 일부(40%) 감액하기는 하나, 이는 기소 등에 따른 ‘직무정지’(직위해제 또는 권한대행)로 인한 효과인 점, 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의 책임성 강화 및 주민신뢰 제고를 위해 제정안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34) 참고로, 2022년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나 구속된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35)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36) 다만, 국회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의 2분의1을 감액함.

3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8조의2(권한대행기간 중의 연봉감액 등) ①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권한대행기간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월액을 감액지급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권한대행기간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안 제4항)

제정안은 구금된 의원이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비용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면서,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소급 지급함에 있어 기간 경과로 인한 금전적 이자 손실을 보충하려는 취지로 보임.

가산하는 이자를 조례로 정하게 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율이 상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법」에서 정하는 법정이율³⁸⁾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율이 다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안 제5항)

제정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위임대상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임.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의정비심

38)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조례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의정비의 금액·종류 등에 대한 심사가 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 임기, 운영절차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³⁹⁾.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제도의 본질적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9)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을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의정비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의정비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마. 정책지원 전문인력 및 재해보상(안 제32조 및 제33조)

지방자치법	제정안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2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u>
제42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3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및 지방의회의원의 상해·사망 보상에 관하여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다만, 「지방자치법」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해당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고 있음.

참고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행정의 복잡·전문화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에 따라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시 도입된 제도임.

바. 의원의 청가 및 결석(안 제34조)

국 회 법	회의규칙 권고안	제 정 안
제32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請假書)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4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및 결석신고서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대해 필요한 사

국 회 법	회의규칙 권고안	제 정 안
	② 의원이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회의규칙 권고안」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회의 규칙에 위임하려는 것임.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의 집회에 성실히 응하여 회의와 표결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원의 출석의무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불가피한 요건이므로 여타의 활동보다 우선되어야 함⁴⁰⁾.

이에 따라 국회의 경우 「국회법」에서 예외적으로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의 청가 및 결석 근거를 마련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제정안의 경우에도 「국회법」과 동일하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의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의원의 청가 및 결석은 의사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이므로 지방의회 자율권 보장 차원에서, 지방의회가 스스로 정하도록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40) 「국회법해설」, 국회사무처, 2024, p.136

사. 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및 지방의회의 의무 등(안 제35조
및 제36조)

지방자치법	제정안
제45조(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각급 법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公訴)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u>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35조(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의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의회의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각급 법원장은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公訴)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6조(의회의 의무 등) ① 의회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u>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제정안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동일하게 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및 지방의회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방의회에 소속의원 및 당선인의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외에 구체적인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방의회의원 및 당선인의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4장)

국 회 법	제 정 안
제4장의2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①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	제4장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37조(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①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국 회 법	제 정 안
용 2.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3.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4.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5.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민간 부문에서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6.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의 명단 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나.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u>6의2.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에 따</u>	1.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2.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3.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4.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5.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민간 부문에서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6.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의 명단 7.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국 회 법	제 정 안
<u>른 비율 또는 금액의 가상자산</u> <u>(「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u> <u>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u> <u>자산을 말한다)과 발행인 명단</u> <u>가. 발행가상자산 총수의 100분의</u> <u>30 이상</u> <u>나. 1천만원 이상</u> 7.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 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 산을 포함한다) 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 권 및 전세권 나.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 용되는 권리 8. 그 밖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회규칙으 로 정하는 재산사항 ② 의원은 <u>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u> <u>일 기준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u> <u>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을 그 기준일</u> <u>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u> <u>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u> 다만, 국 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6 월 30일 기준의 변경사항은 변경등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 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 산을 포함한다) 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 권 및 전세권 나.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 용되는 권리 8. 그 밖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 는 재산사항 ② 의원은 <u>제1항 각 호의 등록사항</u> <u>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u> <u>에는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u> <u>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u> <u>여야 한다.</u>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 또 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

국 회 법	제 정 안
록하지 아니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사항 2.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사적 이해관계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의원(의원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의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나 제32조의3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에 관한 검토 과정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공개, 소명자료 제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록된 사적 이해관계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의원(의원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나 제38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에 관한 검토 과정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공개, 소명자료 제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국 회 법	제 정 안
제32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32조의2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을 선임하는 경우: 6월 1일까지. 다만, 해당 기한까지 의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이 선출되는 즉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상임위원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 그 임기만료일 15일 전까지 3. 재선거·보궐선거 등으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등록한 날부터 10일 이내	제38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37조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조례로 정한 기한까지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국 회 법	제 정 안
4.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의4(이해충돌의 신고) ①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전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3.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4. 의원 임기 개시 전 2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단체 5.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u>다음 각 목에</u>	제39조(이해충돌의 신고) ①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전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3.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4. 의원 임기 개시 전 2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단체 5.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u> 이상의 주

국 회 법	제 정 안
<u>다른 비율의</u>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u>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u> <u>나.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u> 6.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수행하는 의원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7. 그 밖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의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방법·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	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6.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위원회의 안건 심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수행하는 의원과 조례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7. 그 밖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의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방법·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0조(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국 회 법	제 정 안
건 등에 대한 회피) ①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32조의4 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의6(「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① 의원이 제3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자료가 공개된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	등에 대한 회피) ①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 제39조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의장과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41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① 의원이 제3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자료가 공개된 경우 「공직자의 이해

국 회 법	제 정 안
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것으로 본다.	충돌 방지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것으로 본다.

제정안은 「국회법」과 같이 지방의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게 하며, 지방의회의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상황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신고·회피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과 비교하여 등록 대상이 되는 사적 이해관계가 대부분 동일하나, 2023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내용이 등록 대상으로 추가되었고, 2024년 「국회법」 개정 시에는 국회의원인 매년 2회 등록 사항의 변경을 등록하도록 규정되는 등 국회의원에게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따라서 제정안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국회법」 개정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의회의원의 등록대상 및 범위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제도 비교>

구 분	국회의원	지방의원
근거법률	「국회법」	제정안
등록사항 등 공개	- 공개가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u>등록사항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회공보 및 인터넷을 통해 반드시 공개</u>	-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u>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음</u>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명단 공개	- <u>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u> 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의 명단 공개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u> 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의 명단 공개
가상자산 등 명단 공개	- <u>발행가상자산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천만원 이상</u> 의 가상자산 및 <u>발행인</u> 명단 공개	- 관련 규정 없음
변경등록	- <u>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기준</u> 으로 변경사항을 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 <u>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u> 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변경등록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성과 직무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지방의회의원에게도 국회의원과의 동일한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인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제5장)

가. 교섭단체, 위원회의 설치, 상임위원회의 직무 등(안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u>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u> ② <u>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u>	제33조(교섭단체) ①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 의원에 이동(異動)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제42조(교섭단체) ① 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② <u>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를 두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u>

지방자치법	국회법	제정안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위원회</u>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의 종류)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종류로 한다.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③ 교섭단체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3조(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상임위원회</u>와 <u>특별위원회</u>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44조(상임위원회의 직무 등)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종류·소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체,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규정한 것임.

나. 전문위원과 공무원(안 제45조)

지방자치법	제 정 안
제6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u>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u>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제45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u>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u>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집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국회법」

제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수행한다.

지 방 자 치 법	제 정 안
⑤ 전문위원은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⑥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제정안은 지방의회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하면서(제1항), 전문위원의 집행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와 위원회 및 본회의에서의 발언 근거를 마련하며(제3항 및 제4항),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항).

안 제1항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는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도 지방의회의 위원회에는 의사운영 및 사무처의 지원을 위한 공무원이 배치되고 있으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안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국회법」과 같이 전문위원에 자료제출 요청 등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자치입법활동 등 지원

업무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안 제5항의 경우 현행 「지방자치법」과 달리 위임의 방식을 변경(대통령령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하고 있음.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조⁴¹⁾는 전문위원 등의 직급과 정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은 향후 대통령령에서는 전문위원 및 공무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해당 범위에서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전문위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4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와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시·도와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 전문가의 활용(안 제46조)

국 회 법	제 정 안
제43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인원이나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6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학식과 경험에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가 활용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71조에 따른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지방의회의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과 유사한 제도로 「국회법」은 위원회에서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전문가의 활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⁴²⁾

사회가 고도화·전문화됨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는 법률안 등 안전 심사에도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점점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회법」은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91. 5. 31.) 시 중요한 안전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전의 심사 시 위원회가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 2. 16.) 시 이를 3명 이내로 확대하였음⁴³⁾.

4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전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충청북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전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3명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자문위원의 직무내용과 수당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전문가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전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의장의 허가를 얻어 심사 및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심사 및 사무보조자에게는 별도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43) 「국회법해설」, 국회사무처, 2024, p.205

지방의회 또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타당한 취지로 보임.

라.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안 제47조
부터 제50조까지)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u>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u>	제44조(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특별위원회) ① <u>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라 <u>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u>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다. ③ 그 밖의 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8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u>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u>

지 방 자 치 법	국 회 법	제 정 안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9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지방자치법	국회법	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1. 의원의 겸직,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 2.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3.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50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원의 겸직, 영리행위 및 이해충돌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

지방자치법	국회법	제정안
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자격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국회법」을 참고하여 지방의회에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려고 하는 것임.

특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국회법」과 동일하게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국회법」의 규정을 참고하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정안에서 규정하지 않고, 설치의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에 따라 운영 양상이 다양한 바, 제정안과 같이 항상 설치·운영하는 경우⁴⁴⁾, 활동기간을 사전에 정하는 경우⁴⁵⁾, 선택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거나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⁴⁶⁾ 등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제정안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일률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할 경우 지방의회의 상이한 위원회 구성·운

44)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16명 이내로 한다.

③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0조제1항과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재임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9조제3항, 제6항부터 제7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특별위원회) ① 의회에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에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에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45)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특별위원회)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3. 그 밖에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②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은 그 이유와 활동기간, 위원 정수,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이 경우 위원 정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3명을 초과할 수 없다.

46) 「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므로,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와 같이 재량사항으로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 여부는 개별 지방의회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제정안과 같이 법률 규정을 통해 모든 지방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마. 위원회의 개회, 연석회의, 공청회 및 청문회 등(안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제69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① 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	제55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① 의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를 방청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	제51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① 위원회에서 해당 의회의 의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을 명할 수 있다. 제70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최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회의규칙 권고안」 제62조(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제52조(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최한다. 1.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2.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63조(연석회의) ① 소관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連席會議)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려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을 명할 수 있다. 제52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연석회의) ① 소관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서면에 적어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④ 세입예산안과 관련 있는 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회의규칙 권고안」 제63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제64조(공청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제정 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 제6항에 따른다.	제54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전·일시·장소·진술인·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 진술인과 위원의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전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그 밖에 공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전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제55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전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

지방자치법	국회법	제정안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정 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 제6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청문회 개최 5일 전에 안건·일시·장소·증인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청문회에서의 발언·감정 등에 대하여 이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u>구하고 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u> <u>③ 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u>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⑦ 청문회에 대해서는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제46조의3에 따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제56조(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③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국회의원 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에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한다)에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u>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를 말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u> ③ 상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u>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u>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제의하며, 위원 선임에 관하여는 제4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본다. 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⑥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제57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국회법	제정안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국회법」, 「회의규칙 권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에서의 방청, 위원회의 개회, 연석회의, 공청회, 청문회, 인사청문회,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음(안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안 제51조 및 제52조)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국회법」과 동일하게 위원회에서의 방청 및 위원회의 개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위원회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5조(회의의 공개 등)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회 회의장의 제약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방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개회와 관련하여서는 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규정과 동일한데, 「지방자치법」은 「국회법」과 달리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도록 규정(「국회법」은 재적의원 1/4이상의 요구)하고 있으며,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개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안 제53조 및 제54조)

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달리 연석회의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법」 제63조(연석회의) 및 제64조(공청회)에 관한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연석회의는 안건이 둘 이상의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을 때에 그 안건을 회부받은 소관 위원회가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여는 회의이며,

공청회는 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의 입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여 안건 심사를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⁴⁷⁾

47) 「국회법해설」, 국회사무처, 2024, p.311

(안 제55조)

제정안은 지방의회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경기도의회에서는 회의규칙에 위원회의 청문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⁴⁸⁾, 회의규칙 개정 당시 법적인 근거 없이 소관 현안조사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음⁴⁹⁾.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요지>

※ 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 현안 조사 청문회는 대법원 판결 요지⁵⁰⁾와 같이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넘어 법령에 근거 없이 회의규칙으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한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48)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2(청문회)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증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1.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조례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단, 인사와 예산에 관한 안건은 제외한다)

49) 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16.12.13.) 회의록

50)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추87, 판결 [요지]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지적의 근거가 된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법률에 근거 없이 ‘인사청문회’를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청문회 규정에 적용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논의과정에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회의규칙에 청문회가 규정되었음.

이해관계가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와 달리 ‘청문회’는 안전심사 및 행정사무감·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행위로서 집행기관의 장이나 소속 공무원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증언·진술을 청취하여 해당 제도 자체가 집행기관에 대한 새로운 견제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청문회와 공청회의 비교>

	청문회	공청회
개최안건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중요안건의 심사	- 중요안건 및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
출석대상	- 증인·감정인·참고인	- 이해관계자 -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안 제56조 및 제57조)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시장·부지사 등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3년 3월 2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어, 인사청문회를 규정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⁵¹⁾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근거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률상 근거를 가지게 됨.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고 후보자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51)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하위법규인 조례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4.7.22. 선고 2003추44 판결).

6. 회의(제6장)

가. 개의(안 제58조)

회의규칙 권고안	국 회 법	제 정 안
제13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도 또한 같다.	제72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	제58조(개의) 본회의는 <u>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u>

제정안은 「회의규칙 권고안」에 규정되어 있는 본회의의 개의를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개의를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의 경우 「국회법」에서 본회의는 2시에 열되,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지방의회의 개의방식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현재 시·도의회의 개의방식은 다음과 같음.

<시·도별 개의방식>

개의방식	해당 시·도
본회의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와 협의하여 정함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본회의의결 또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함	서울특별시, 경기도
10시 개의, 변경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함	부산광역시
본회의의결 또는 의장이 정함	울산광역시

행정안전부는 본회의 개의는 의사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이므로 지방의회 자율권 보장 차원에서, 지방의회가 스스로 정하도록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표결의 선포, 표결방법(안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제72조(의사정족수) ①	제73조(의사정족수) ① 본	제59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참석 인원이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제73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의장은 제72조에 따른 개의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流會)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0조(표결의 선포)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제60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1조(표결의 선포 등)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 · 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 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112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기립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②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62조(표결방법 등) ①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12조에 따른 의장 · 부의장 선거 2. 제16조에 따른 임시 의장 선출 3. 제19조에 따른 의장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 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 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 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86조에 따른 자격 상실 의결 5. 제93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그 밖에 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② <u>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u> ③ <u>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u>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국회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표결의 선포 및 표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61조(표결의 선포 등)의 규정은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시 지방의회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삭제된 규정인 점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제정안 제62조제1항 각 호에서 「지방자치법」과 달리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을 기명투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무기명투표는 소위 비밀투표라 하여 누가 가 또는 부를 표시하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원은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거나 외부의 압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진의를 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⁵²⁾ 투표의 책임성 확보가 어려워 의원의 투표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제한될 수 있는 등 단점이 있음.

따라서, 무기명 투표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국회의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있음.⁵³⁾

52) 국회법해설, 국회사무처, 2024, p.548p

53) 「국회법」

제112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기립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 회의의 공개, 의안의 발의, 조례안예고, 회기계속의 원칙, 회의 규칙, 회의록 등(안 제63조부터 제72조까지)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5조(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제의나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63조(회의의 공개 등) ①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64조(의안의 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1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 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법률안 제명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할 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明示)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 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77조(조례안 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u>우를 포함한다)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 발의의원(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포함할 수 있다)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다.</u> ⑤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 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65조(조례안 예고) ① 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②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긴급히 입법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의 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②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66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9조(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일사부재의 원칙)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제69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제70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1조(회의규칙) 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5조(회의록) ① 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 ~ 19. (생략) ③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회의록)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의장은 회의록을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국회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회의의 공개, 의안의 발의, 조례안 예고,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회기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회의규칙, 회의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회법」은 정당 간 초당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79조제4항을 개정(2023.7.11.)하여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고려하여 지방의회에도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음.

7. 청원(제7장)

지방자치법	국회법	제정안
제85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은 청원자의	제73조(청원서의 제출) ① 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제86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 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 한다.	주소·성명(법인인 경 우에는 그 명칭과 대 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서 명한 문서(「전자정부 법」 제2조제7호에 따 른 전자문서를 포함하 다)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 문서로 제출하는 청원 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이 대체된 것으로 본다. ④ 청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내 용의 청원 2. 국가기관을 모독하 는 내용의 청원 3. 국가기밀에 관한 내 용의 청원 ⑤ 제1항에 따른 국민 의 동의 방법·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 요한 사항, 제3항에 따 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에 관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야 한다.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 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 한다.
제87조(청원의 심사·	제125조(청원 심사·보	제75조(청원의 심사·

지방자치법	국회법	제정안
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고 등) ① 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③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126조(정부 이송과 처리보고) ①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리) ①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

지방자치법	국회법	제정안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국회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청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임.

청원이란 국민이 공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가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이나 희망을 자유롭게 개진하게 함으로써 입법이나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담보하고 국민주권주의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의 확립에 기여한다는 의의가 있음⁵⁴⁾.

참고로,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⁵⁵⁾.

54) 「국회법해설」, 국회사무처, 2024, p.597

55) 「대한민국헌법」

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청원권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청원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8. 행정기관과의 관계(제8장)

가.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등(안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받	제127조(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77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받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 제3조(국정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連署)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

지방자치법	국회법	제정안
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지방자치법	국회법	제정안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u>시정이 필요한 사</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지방자치법」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조례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78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u>신정 또는 관련 공무원</u>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u>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u>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u>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②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u>의 징계를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 또는 징계를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u>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u>시정 또는 징계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제79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법	국회법	제정안
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나 관계 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8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u>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u> ④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

지방자치법	국회법	제정안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국회법」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서류제출 요구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임.

제정안 제78조제2항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요구사항에 징계요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⁵⁶⁾.

다만, 제정안은 징계요구의 요건을 ‘공무원의 징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폭넓게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집행부의 업무부담 가중 및 자율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56) 참고로 대법원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견제수단을 둔 것으로 보아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제정안은 징계요구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것이므로 차이가 있음.

참고로, 국회의 경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⁵⁷⁾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집행기관의 자율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나.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안 제81조)

국 회 법	제 정 안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①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	제81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등) ① 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그에 소속한 공무원 등의 직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청구는 의회 본회

5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③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④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 회 법	제 정 안
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의의 의결을 거친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의장 명의로 청구한다.

제정안은 「국회법」과 유사하게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검사⁵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무를 감찰⁵⁹⁾할 권한이 있으며, 감사원 훈령인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⁶⁰⁾.

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명문으로 규정할 것

58) 「감사원법」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59)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60)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3조(청구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4. 지방의회.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조(청구대상) ① 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그에 소속한 공무원 등의 직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수행하는 통제기능이 더욱 강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재도 지방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근거조문을 제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나, 법률에서 지방의회의 감사 청구의 근거를 직접 규정하는 경우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실효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9. 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제9장)

지방자치법	국회법	제정안
제89조(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135조(사직) ①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82조(의원의 사직) 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90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136조(퇴직) 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83조(의원의 퇴직)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지방자치법	국회법	제정안
당될 때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에서 퇴직한 다. 1. 제43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 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 자치단체의 구역 밖 으로 주민등록을 이 전하였을 때를 포함 한다)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제93조(결원의 통지) 지 방의회의 의장은 지방 의회의원의 결원이 생 겼을 때에는 15일 이내 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 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91조(의원의 자격심 사)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 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 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제출하여 공직선거후 보자로 등록되었을 때 에는 의원직에서 퇴직 한다. ② 의원이 법률에 규 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 다. ③ 의원에 대하여 제2 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 야 한다. 제137조(결원 통지) 의 원이 결원되었을 때에 는 의장은 15일 이내 에 대통령과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통지하 여야 한다. 제138조(자격심사의 청 구) 의원이 다른 의원 의 자격에 대하여 이 의가 있을 때에는 30 명 이상의 연서로 의	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직에 취임했을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 역변경이나 없어지거 나 합한 것 외의 다 른 사유로 그 지방자 치단체의 구역 밖으 로 주민등록을 이전 하였을 때를 포함한 다)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제84조(결원의 통지) 의 원이 결원(闕員)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 관할 선거관리위원 회에 알려야 한다. 제85조(의원의 자격심 사) ①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 원 4분의 1 이상의 연

지방자치법	국회법	제정안
찬성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2조(자격상실 의결) ① 제91조제1항의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42조(의결) ② 심사 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③ 본회의는 심사대상 의원의 자격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사 대상인 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6조(자격상실의결) ① 제85조제1항의 심사 대상인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심사 대상인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국회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사직·퇴직 자격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사직·퇴직·자격심사에 관한 규정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소멸시키

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제정안과 같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한편, 의원의 사직에는 의회의 허가를 필요로 하게 하는데, 이는 의원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주민 대표로서 선출되고, 주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의회를 구성해야 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직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임⁶¹⁾.

<사직과 퇴직의 비교>

구분	사 직	퇴 직
개념	- 자신의 의사로 직을 포기	- 법률이 정한 사유에 의해 직위를 상실
사유	- 자신의 의사	- 경직이 금지되는 직에 취임 - 피선거권 상실 - 징계에 따라 제명
의회의 허가	- 회기 중: 지방의회 의결 - 폐회 중: 의장 허가	- 필요 없음

10. 질서(제10장)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나	제145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제87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장이나 위원장은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61)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행정안전부, p.301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그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②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이 있으면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8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법	국회법	제정안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96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지방의회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 제97조(방청인의 단속)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제147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53조(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① 흥기를 지닌 사람, 술기운이 있는 사람,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① 의장은 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89조(발언방해 등의 금지)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 제90조(방청인의 단속)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지방자치법	국회법	제정안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청인 단속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u>제11절 징계</u>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99조(징계의 요구) ①	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②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u>제14장 징계</u>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 16. (생략)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③ 방청석이 소란하면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④ 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91조(징계의 사유) 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92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 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부) ① 의장은 제 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징계대상자로부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징	의장은 제91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제88조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징

지방자치법	국회법	제정안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162조(징계의 의결)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3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지방자치법	국회법	제정안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除名)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94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국회법」의에서 규정된 회의 질서유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제5장제10절 질서, 제5장제11절 징계)과 「국회법」(제13장 질서와 경호, 제14장 징계)은 질서와 징계를 별도의 장·절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질서와 징계는 규정 내용의 성질이 달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제정안에서도 별도의 장을 통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1. 보칙(제11장)

가. 기간의 기산일 및 의회규칙(안 제95조)

지방자치법	국 회 법	제 정 안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8조(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제169조(규칙 제정) ①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 법과 제1항의 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및 안건 심사 등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95조(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제96조(의회규칙) 의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정안은 「국회법」과 같이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날을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의회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57조⁶²⁾를 적용하여 첫날을 산입하지 않고 있었음.

제정안과 같이 기간의 기산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경우 기간의 산정과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2. 부 칙

가. 시행일

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의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지방의회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행일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62)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다른 법률의 개정

제 정 안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4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90조”를 “「지방의회법」 제83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의장으로 당선되어 「지방의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를 “사무기구의 장에게”로 한다. ③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법령의 범위에서”를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로 한다. 제37조 앞의 “제5장 지방의회”를 삭제한다. 제37조 앞의 “제1절 조직”을 삭제한다.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5장제2절(제39조부터 제4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3절(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4절(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5절(제57조부터 제6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6절(제63조의2부터 제7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7절(제72조부터 제8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8절(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9절(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 정 안

제5장제10절(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11절(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12절(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을 삭제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의회법」”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지방의회법」 제32조”로,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의회법」 제43조”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0조”를 “「지방의회법」 제31조”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을 “「지방의회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45조제5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63조 중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의회법」 제43조”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지방의회법」 제5조”로 한다.

제67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제1호”를 “「지방의회법」 제30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을 “「지방의회법」 제64조제1항”으로 한다.

제7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72조”를 “「지방의회법」 제59조”로, “제73조”를 “제60조”로 한다.

제152조제5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를 “「지방의회법」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⑤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를 “「지방의회법」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⑥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정 안

제24조제1항제11호 중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을 “「지방의회법」 제78조제2항”으로 한다.

⑦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를 “「지방의회법」 제3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를 “「지방의회법」 제3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의회법」”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지방의회법」 제32조”로,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의회법」 제43조”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0조”를 “「지방의회법」 제31조”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을 “「지방의회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45조제5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63조 중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의회법」 제43조”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지방의회법」 제5조”로 한다.

제67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제1호”를 “「지방의회법」 제30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을 “「지방의회법」 제64조제1항”으로 한다.

제7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72조”를 “「지방의회법」 제59조”로, “제73조”를 “제60조”로 한다.

제152조제5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를 “「지방의회법」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⑤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를 “「지방의회법」 제3

제 정 안
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⑥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1호 중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을 “「지방의회법」 제78조제2항”으로 한다. ⑦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를 “「지방의회법」 제3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를 “「지방의회법」 제3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정안은 지방의회 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하는 본칙 규정의 도입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의장에 취임하여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 퇴직하지 아니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은 효율적인 개정방식이기는 하나, 다른 법률의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개정으로 단순히 조항의 번호가 바뀐 경우에 바뀐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인용조문을 정리하는 경우와 같이 다른 법률의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⁶³⁾.

제정안 부칙은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⁶⁴⁾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

63)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법제실, 2024, p.913

례대표의원의 당적 이탈로 인한 퇴직 규정의 예외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게도 적용하려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규정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제정안 부칙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직접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334

64) 「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④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